# 제 6 장 대외협력 및 교류위원회

**제19조 (설치와 구성)** 의과대학은 교원 및 학생의 국제 및 국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외협력 및 교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1.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무부학장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보직 기간으로 한다.
3.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산하에 학생교류소위원회와 대외홍보소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9년 3월 26일]

**제20조 (기능)** 대외협력 및 교류위원회는 국제 및 국내교류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결된 사항을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1. 외국 학교 및 연구소와의 자매결연
2. 학과, 교실 및 교수의 해외교류
3. 교원 및 학생의 국내 및 해외연수 [개정 2019년 3월 26일]
4. 국제교류를 위한 기금조성
5. 학교의 대외홍보 관련 업무 [신설 2019년 3월 26일]
6. 기타 의과대학장이 부의하는 사항